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4회 임시회

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
운용계획 변경안
【집행부 제출】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9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16.

기획재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)
- 제출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검토기간: 2025. 9. 4.(목) ~ 9. 10.(수)

2. 제안이유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근거한 행안부의 예수·예탁 활용 가능 검토 결과에 따라,
- 회계·기금간 여유재원을 확보하여 신속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대응하고자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.

3. 주요내용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됨.
- 이 중 통합계정은 주차장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변경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고,
-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환할 계획임.

4.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및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운용하고 있음.
- 이번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,

〈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4년도말 조성액(a)	2025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5년도말 조성액 (e=d+a)
	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기 정	505,192	4,054,477	0	4,054,477	4,559,669
변 경	505,192	11,554,477	0	11,554,477	12,059,669
증 감	0	7,500,000	0	7,500,000	7,500,000

※ 수입⑥: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(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 회수 제외)

※ 지출⑦: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(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)

-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에 따라 여유재원인 주차장특별회계 4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35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고, 그 전액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신속하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구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-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따른 검토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75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,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〉

【 관계 법령 】

□ 지방재정법

-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-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

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【 현 행 조 례 】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 이라 한다)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 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100분의 20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(개정 2025. 2. 21.)
2.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(개정 2025. 2. 21.)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5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(개정 2025. 2. 21.)
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

3.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4.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

5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6. 그 밖에 구청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⑤ (삭제 2025. 2. 21.)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 (개정 2025. 2. 21.)

② 통합기금은 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
제6조(이자) ①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구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
3.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
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
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(신설 2025. 2. 21.)

6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

의에 부치는 사항 [중전 제5호에서 이동 2025. 2. 21.]

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(신설 2025. 2. 21.)

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 (신설 2025. 2. 21.)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관: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장
2. 통합기금출납원: 통합기금 업무담당 팀장

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,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(개정 2025. 2. 21.)